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1. 12. 17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이신자 의원 외 7명
- 발의일자: 2021. 11. 25.
- 회부일자: 2021. 12. 3.
- 상정 및 의결: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(2021. 12. 17.)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전부개정)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, 법령과 중복된 조항 정리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.

3. 개정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인용조문 변경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→ 제43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 → 제44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 → 제46조
- 나. 「지방자치법」과 중복된 조항 삭제
 - 안 제3조제4호, 제5조제5항, 제8조, 제9조제2호 및 제6호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, 제44조, 제46조, 제98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

나. 비용추계: 비대상

다. 입법예고(2021. 11. 25. ~ 2021. 11. 30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 전부개정)이 전부개정 되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,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며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위반 사항이 없고,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토론 요지

- 안 별지 중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 등을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8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9. 수정내용: 붙임 수정안과 같음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제35조제3항”을 “제4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제35조제3항”을 “제43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”을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으로 한다.

수정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<별지 제1호서식></p> <p>지방자치법 <u>제35조제3항</u>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겹직(변경) 사항을 신고합니다.</p>	<p><별지 제1호서식></p> <p>지방자치법 <u>제43조제3항</u>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겹직(변경) 사항을 신고합니다.</p>
<p><별지 제2호서식></p> <p>지방자치법 <u>제35조제3항</u>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겹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</p>	<p><별지 제2호서식></p> <p>지방자치법 <u>제43조제3항</u>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겹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</p>

<별지 제3호서식>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
제33조 · 제33조의2 및 대구광역시달
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
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
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
을 신고합니다.

<별지 3호서식>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
관한 법률 제33조 · 제33조의2 및 대
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
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
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
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.